##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(서범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2456

발의연월일: 2024. 7. 31.

발 의 자:서범수・이헌승・강선영

김기현 • 장동혁 • 권영진

엄태영 · 김소희 · 윤영석

김위상 · 성일종 의원

(119]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일부터 3년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를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규정하되, 식품 등 국민안전에 관련된 인증·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방위산업분야의 사기업체 또는 법인·단체의 경우에는 자본금 및 연간 외형거래액에 관계없이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(LH)가 시공한 공공아파트 단지들의 지하주차장에서 철근이 누락된 사태가 발생하였는데, 해당 단지들의 대부분이 LH 퇴직자가 임직원으로 근무했던 업체가 설계·감리를 맡은 것으로 밝혀져 특혜성 계약 등 부정한 유착관계를 방지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취업심사대상기관에 건축 • 건설 분야의 설계 또는 감리 업무

를 수행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·단체를 추가하여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 등 그 규모에 관계없이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것임(안 제17조제1항제12호다목 신설).

법률 제 호

##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1항제12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. 건축·건설 분야의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·단체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취업제한에 관한 적용례) 제17조제1항제12호다목의 개정규정은
이 법 시행 이후 퇴직하는 취업심사대상자부터 적용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7조(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)	제17조(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)
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12	①
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	
는 공직자와 부당한 영향력 행	
사 가능성 및 공정한 직무수행	
을 저해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	
여 국회규칙, 대법원규칙, 헌법	
재판소규칙, 중앙선거관리위원	
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	
하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	
직원(이하 이 장에서 "취업심	
사대상자"라 한다)은 퇴직일부	
터 3년간 다음 각 호의 어느	
하나에 해당하는 기관(이하	
"취업심사대상기관"이라 한다)	
에 취업할 수 없다. 다만, 관할	
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	
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	
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	
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	
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	
확인을 받거나 취업승인을 받	
은 때에는 취업할 수 있다.	

- 1. ~ 11. (생략)
- 1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
  •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
  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기업
  체 또는 법인 단체
  가. 나. (생 략)
  <신 설>

② ~ ⑨ (생 략)

1. ~ 11. (현행과 같음)
12
가.・나. (현행과 같음)
다. 건축ㆍ건설 분야의 설계
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
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ㆍ
<u>단체</u>
② ~ ⑨ (현행과 같음)